

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(의사록)

1. 회의 개요

□ 일시 / 장소 : '23. 2. 9.(목), 10:30 ~ 16:16/ 원안위 대회의실

□ 참석자

- 위원 : 위원장, 위원 8명(임승철, 김근태, 김호철, 박찬홍, 이수재, 이승숙, 제무성, 하정규)
- 간사 : 기획조정관
- 배석 : 안전정책국장, 방사선방재국장, KINS 원장 등

□ 상정 안건

○ 심의·의결 (3건)

- (제1호)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(안)
- (제2호) 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 고시 제정(안)
- (제3호)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및 관련 고시 개정(안)

□ 회의 결과

구 분		안 건 명	심의결과
심의 · 의결	제1호	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(안)	원안의결
	제2호	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고시 제정(안)	수정의결
	제3호	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및 관련 고시 개정(안)	원안의결

2. 회의 내용

① 성원 보고

- 재적위원 총 9명 중 9명 참석

② 개회 선언

③ 안건 심의·보고

【심의·의결 제1호】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(안)

○ 주요내용

-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(원자력안전규제계정)에 대한 「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(안)」

○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【심의·의결 제2호】 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 고시 제정(안)

○ 주요내용

-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이 개정('22.6.10. 공포, '23.6.11. 시행)됨에 따라,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·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」 고시 제정(안)

○ 심의결과 : 수정의결

-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관리기준(6mSv)을 초과할 경우 항공승무원이 안전조치 사항을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

**【심의·의결 제3호】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및 관련
고시 개정(안)**

○ 주요내용

-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 처분을 위해 ‘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’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「원자력 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및 관련 고시 개정(안)

○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3. 폐 회 (16:16)